"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"

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
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

보 도 참 고 자 료

보도	배포시부터 보도 가능	배포	2016. 6. 27.(월)

담당부서	자본시장감독국	함용일 팀 장(3145-7570), 김호빈 선 임(3145-7573)

제 목 :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등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

▶ 6월30일부터 **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**되고, 공매도 공시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**과태료가 부과**됩니다.

Ⅰ 배 경

□ 대량 **공매도 투자자 공시 제도***('공매도 공시제도') 등 **변경된 공매도 제도**가 '16.6.30.**부터 본격 시행되고

*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기적 공매도 억제 및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영국, 일본, 홍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대부분 시행중

** 6.30.(木) 부터 변경된 법규가 시행되고, 공시(또는 보고)자료 제출은 T+3(영업일 기준)까지 하면, **7.5.(火) 장 종료 후**부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시됨

○ 이미 시행중('12.8.30.)인 **공매도 보고 제도**도 투자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**일부 개선**

○ 또한, 공매도 공시제도와 보고제도의 **실효성 확보**를 위하여 **공시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**가 부과될 예정

➡ 공시제도 등 **공매도 제도 변경 내용**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**이해하고 준수**할 수 있도록 **상세내용, 절차 등을 안내**

Ⅱ 공매도 제도 변경 주요내용

1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

2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개선

3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(신설)

1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

1 **(공시 의무자)**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*을 공매도하여 **공매도 잔고가 일정 비율 이상인 투자자**

* 주식 **종목별**로 구분(ETF, ELW, DR 등은 제외)

※ 공매도 잔고(포지션)

- 증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하여 매도하고 **상환하지 않은 수량**
- 개인투자자가 **신용대주**를 이용하여 매도하고 **상환하지 않은 수량**

2 **(공시의무 발생비율*)**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**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'공매도 잔고 비율'이 0.5% 이상**

* 상장주식에 대한 일별 순 보유잔고 비율이 음수(-)로서 그 절대 값이 0.5% 이상

○ **다수의 증권사**를 통해 **동일한 종목**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종목별로 **순 보유수량을 합산**하여 잔고비율을 계산하여야 함

$$\text{공매도 잔고 비율}\ (\%) = \frac{\text{공매도 잔고}}{\text{상장 주식수}^*} \times 100$$

* **(현행)** 발행 주식수 → **(변경)** 상장 주식수[개정 시행령 208조의2의④]

3 **(공시내용)** 투자자 인적사항 및 공매도 관련 사항

○ 주식 종목별 **'공매도 잔고 비율'이 0.5% 이상인 투자자**의 성명·주소·국적 등 **인적사항**을 공시

4 **(공시기한 및 주기) '공매도 잔고 비율'이 0.5% 이상**에 도달한 날('공시의무 발생일')로부터 **3영업일*** 장 종료(시간외 포함) 후 지체 없이

* (예) '16.7.4.(月) 공매도 잔고 비율 0.5% 도달시, '16.7.7.(木) 장 종료 후 지체 없이

○ **추가 거래가 없어도** 일별 **'공매도 잔고 비율'**이 **0.5% 이상을 유지**하면 **매일 공시의무**가 발생

5 **(공시장소)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(투자자 → 금감원 → 거래소)**

○ **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공시자료를 제출**하고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자료를 전송하여 한국거래소가 게시

투자자	투자자 ▸ 금융감독원	금감원 ▸ 거래소
투자자가 의무 발생여부 판단	① 인적사항 등록(최초 1회) ② 공시관련 자료입력 **※ 투자자의 공시의무 완료**	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금감원이 거래소에 전송 **※거래소가 최종 게시**

※ **(종목별 잔고 정보 제공) 상장 주식에 대한 종목별** 공매도 **잔고 정보**도 별도로 게시(한국거래소)

< 공매도 잔고 공시(예시) >

① **(투자자 공시)** 상장주식 종목별 0.5%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

종 목	공시일자	공시 의무자	주 소	국 적*	기 타**
□□전자	6.30.	△△증권	서울	미국	
	7. 1.	○○자산운용	서울	한국	

* 본사기준, ** 사업자 등록번호(생년월일), 대리인 정보 등을 추가 공시

② **(종목별 게시)** 상장주식 종목별 공매도 잔고 현황*(0.5% 여부 무관)

일 자	시장구분	종목명	공매도 잔고		
			주식수	비율	금액
7.1.	유가증권	OO전자	150만주	0.7%	2,300억원
	코스닥	△△식품	10만주	0.3%	700억원

* 잔고 비율 0.01% 미만 등 보고기준에 미달하면 보고되지 않으므로 실제 공매도 잔고보다는 작을 수 있음

2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개선

□ 이미 시행중('12.8.30.)인 **공매도 잔고 보고제도**는 **현행**대로 유지

○ 다만, **보고의무 발생 기준에 평가액을 추가**하여 소액 투자자의 **불편은 해소**하고 **규제의 사각지대는 제거**

- **(현행)** '공매도 잔고 비율' **0.01% 이상**

- **(개선)** 잔고가 0.01% 이상이어도 **평가액***이 **1억원 미만**이면 **보고의무 면제. 단, 10억원 이상**이면 잔고에 관계없이 보고

* 평가액 = 공매도 잔고 × 종가

<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개요 >

① **(보고 주체)** 투자자(개인 또는 법인)가 직접 보고(대리인 선임가능)

② **(보고 비율)** **공매도 잔고**가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**0.01% 이상**이면서 **평가액 1억원 이상**(단, 10억원 이상은 잔고와 무관하게 보고)

③ **(보고 기한)**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오전 9시까지

④ **(보고 주기)** 매일(기준비율 초과시 계속 보고)

⑤ **(보고 내용)** 해당 증권, 성명 등 인적사항, 공매도 잔고 및 상장 주식총수 대비 비율 등

⑥ **(보고 방법)**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고자 등록 후 잔고내역 등 입력

3 과태료 부과(신설)

□ 상기 공시의무 및 보고의무 미이행 등 **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 행위**에 대하여 **과태료를 부과**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

Ⅲ 향후계획

◇ 금융감독 당국은 그 동안 **변경된 공매도 제도의 원활한 시행**을 위하여 **철저하게 준비**하여 왔음

○ 제도변경 내용에 대하여 **입법예고, 설명회 개최 및 사전 안내자료 배포** 등을 통해 업계 및 투자자들에게 알려왔으며

○ **증권사가 개인투자자들에게** 공매도 잔고 보고·공시 제도에 대해 **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**하고 홍보하도록 하였음

□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**변경된 공매도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**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

○ **금융감독원 홈페이지***에 공매도 보고 및 공시제도와 관련한 상세 예시, 세부 절차 등을 설명한 **매뉴얼 등재** 예정

* 민원·신고 > 자본시장 보고 > 공매도 포지션 공시 및 보고(또는 바탕화면 바로 가기)

○ 또한, **공매도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** 하고 **불공정 의심거래** 등에 대해서는 **철저히 조사**하는 등 **투명하고 효율적인 주식시장 조성**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참 고 투자자의 공매도 공시 및 보고 절차*

* 세부내용은 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고, ② 전화(3145-7573, 7609), ③ 거래 증권사로도 문의 가능

◇ 투자자가 공매도 **공시 및 보고의무를 이행**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**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 ID**를 **발급 받고**(최초 1회), **의무 발생시마다 발급받은 ID로 로그인**하여 **공매도 투자현황을 제출**

① **(인적사항 등록 : 최초 1회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ID 발급을 신청**하고 신분증 사본을 금감원 이메일(secmarket@fss.or.kr)로 전송

* 민원·신고 > 자본시장 보고 > 공매도 포지션보고(또는 바탕화면 바로 가기)

② **(로그인 ID 등 수령)** 투자자가 ①의 인적사항 등록시 입력한 **투자자의 이메일**로 **로그인 ID와 비밀번호**가 전송

③ **(보고·공시자료 제출) 의무 발생일**로부터 3영업일(거래당일 제외, 영업일 기준) **오전 9시까지** 발급받은 ID로 **금융감독원 홈페이지**에 로그인하여 **화면 양식에 따라 자료 제출**

< 공매도 보고 및 공시의무 판단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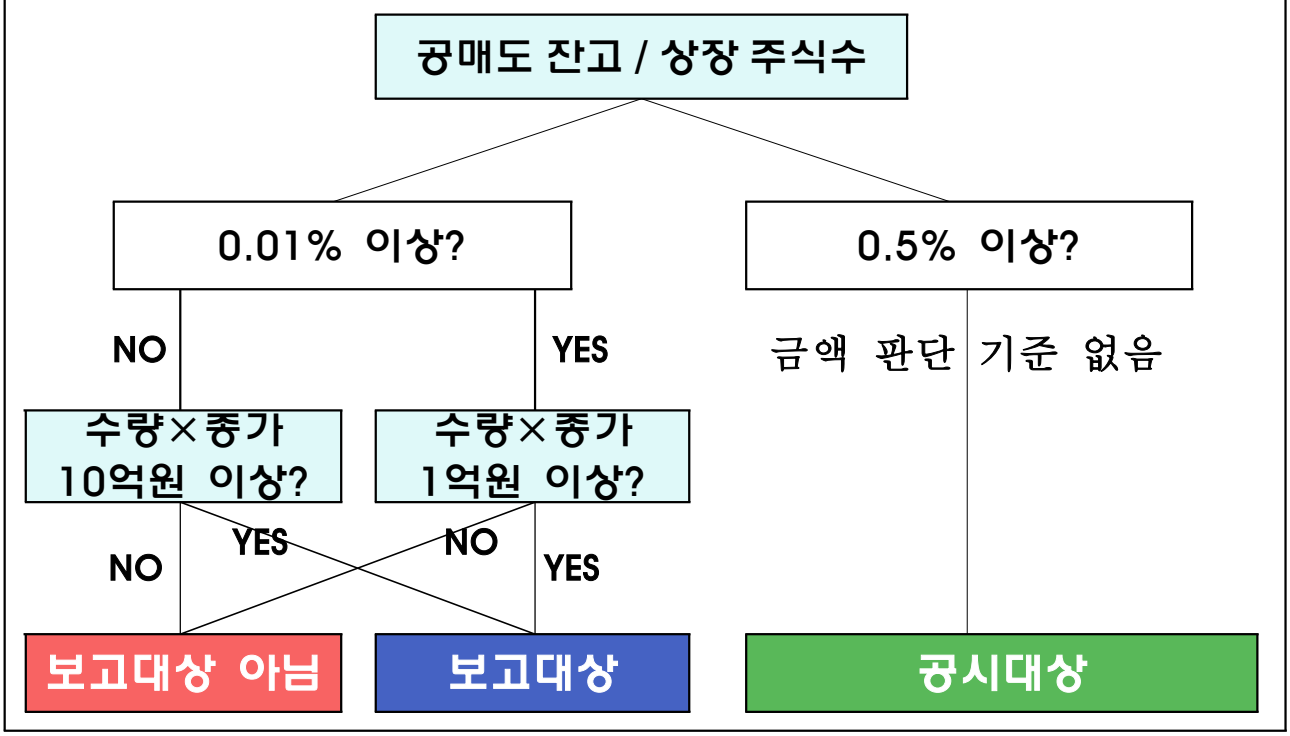
◇ **매 영업일**마다 **주식 종목별**로 보고 및 공시 해당여부를 **판단**